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김이안 외 3명 소유물건 (2025타경955)
의 뢰 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법보좌관 박웅종
평 가 서 번 호	대화 07-2504-2-002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 개작(改作) ·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DAEHWA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18 청수로자벨 705호
대표전화 : (041)417-3535 FAX : (041)554-0224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 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조민기 (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충남지사 지사장 안 재 광 (인)

감정평가액	삼억칠천오백사십구만사천원정 (₩375,494,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법보좌관 박웅종	평가목적 (제출처)	법원경매 (제출처 :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이안 외 3명 (2025타경955)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5. 05. 09	2025. 04. 30 ~ 2025. 05. 09	2025.05.13

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200	토지	1,200	299,000	358,800,000
건물	49.1	건물	49.1	340,000	16,694,000
합 계					₩375,494,000.-
	이	하	여	백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 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안재광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대상물건 개요

1. 토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기호	소재지	면적 (㎡)	지 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1	월산리 530-9	1,200	대	자연녹지	주거기타 (근린생활 시설용지)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126,300

2. 건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기호	소재지	용 도	구조/지붕	연면적(㎡)	층 수	사용승인일자
2	월산리 530-9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 기타(샌드위치판넬)지붕	49.1	지상 1층	2006.06.0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법원 및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이론 등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5월 9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년 4월 30일 ~ 2025년 5월 9일임.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5.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이하"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2. 감정평가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6. 그 밖의 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

1. 감정평가방법 관련 규정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되, 다른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1. 토지의 감정평가

1.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내역

1.1.1. 개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

1.1.2.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현재 공시되어 있는 표준지 중에서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함.

위의 표준지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공시기준일: 2025. 1. 1.)

기호	소재지	면 적 (㎡)	지 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비 고
A	월산리 530-26	850	대	단독주택	자연녹지	세로(가)	사다리 평지	147,4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3. 시점수정치 산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이하 동일).

충청남도 홍성군 (녹지지역)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5.01.01 ~ 2025.05.09	0.294 (1.00294)	충청남도 홍성군 (25.01.01~25.05.09) (녹지) 2025.01.01 ~ 2025.03.31 : 0.203 2025.03.01 ~ 2025.03.31 : 0.072 (1 + 0.00203) * (1 + 0.00072 * 39/31) ≒ 1.00294

1.1.4. 지역요인 비교치 산정

지역요인이란 대상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함.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1.1.5.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대상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하며,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을 판정 · 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하였음.

■ 개별요인 비교항목(주택지대)

개별요인 비교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비교 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1	A	1.00	1.00	1.00	0.95	1.00	1.00	0.950

기 호	개별요인 비교 내용
1	대상은 표준지 대비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함.

1.1.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30241- 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 7. 10. 선고 98두6067, 1993. 9. 10. 선고 92누16300)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단가의 격차율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가격 수준, 낙찰가율 수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	비교사례 단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단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1.1.6.1.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인근 감정평가 선례 및 거래사례

- 인근 감정평가 선례 및 거래사례 내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기준시점 거래시점	평가단가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목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선례 1	월산리 OOO-O, OOO-O	650 일단지	대	2024.11.08	331,000	200,700	시가 참고	단독주택	자연녹지
선례 2	월산리 OOO-O	1,559	대	2023.11.23	511,000	248,400	경매	주상용	자연녹지
선례 3	월산리 OOO-O	840	임야	2020.11.03	273,000	172,900	경매	주상용	자연녹지
사례 1	옥암리 OOO-O	3,703	대	2024.09.04	602,517	507,600	실거래	상업용	자연녹지

※ 상기 개별공시지가는 선례(사례)의 기준시점(거래시점)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거래사례 배분내역

구분	거래가액(원)	사용 승인일	건물 구조/용도	건물 면적 (㎡)	적용 재조달원가	내용 년수	경과 년수	잔존 년수	비 고
사례 1	3,492,000,000	2009.04.10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1,369.8	1,200,000	50	15	35	1동
		2009.04.10	일반철골구조 /자동차관련시설	252.28	700,000	40	15	25	2동
	산식:{거래가액(원)-(적용재조달원가x(잔존연수/내용연수))x건물면적}/토지면적(㎡)=토지단가(원/㎡)								
	{3,492,000,000 - (1,200,000 x (35 / 50)) x 1,369.08 - (700,000 x (25 / 40)) x 252.28} / 3,703 ≒ @602,517								

1.1.6.2. 비교선례(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인근에 위치하는 <선례 1>을(를) 비교선례(사례)로 선정하였음.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기준시점 거래시점	평가단가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목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비 고
선례 1	월산리 OOO-O, OOO-O	650 일단지	대	2024.11.08	331,000	200,700	시가 참고	단독 주택	자연 녹지	세로(가) 사다리 평지

1.1.6.3. 격차율 검토

■ 비교선례(사례)와 비교

- 시점수정

충청남도 홍성군 (녹지지역) 평가선례(1)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4.11.08 ~ 2025.05.09	0.479 (1.00479)	충청남도 홍성군 (24.11.08~25.05.09) (녹지) (1 + 0.00076 * 23/30) * (1 + 0.00126) * (1 + 0.00203) * (1 + 0.00072 * 39/31) ≒ 1.00479

- 지역요인 비교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는 선례(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개별요인 비교

표준지	비교선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A	1	1.00	0.95	1.00	1.00	1.00	1.00	0.950

표준지	개별요인 비교 내용
A	비교표준지는 선례 대비 접근조건(주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 격차율 산정

구 분	기준단가 (원/㎡)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격차율
평가선례(1)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331,000	1.00479	1.000	0.950	315,956	2.137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단가	147,400	1.00294	-	-	147,833	

1.1.6.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적용 보정치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장래동향,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평가액 결정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이 타당함.	**2.1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1.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산식: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기 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47,400	1.00294	1.000	0.950	2.13	299,141	299,000

1.1.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1,200	299,000	358,800,000
합 계	-	-	358,8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내역

1.2.1.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1.2.2.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 1>을(를) 선정하였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거래시점	거래단가 (원/㎡)	개별 공시지가 (원/㎡)	이용상황	용도지역	비 고
사례 1	옥암리 OOO-O	3,703	대	2024.09.04	602,517	507,600	상업용	자연녹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1.2.3. 사정보정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 정 의 견	사정보정치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1.000**

1.2.4. 시점수정치

거래사례가 소재하는 충청남도 홍성군 녹지지역의 경우 거래일자로부터 기준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음. 기준시점 당시 해당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 발표되지 아니하여 최종 발표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충청남도 홍성군 (녹지지역) 거래사례(1)

적용기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4.09.04 ~ 2025.05.09	0.676 (1.00676)	충청남도 홍성군 (24.09.04~25.05.09) (녹지) (1 + 0.00093 * 27/30) * (1 + 0.00095) * (1 + 0.00076) * (1 + 0.00126) * (1 + 0.00203) * (1 + 0.00072 * 39/31) ≒ 1.00676

1.2.5. 지역요인 비교치

결 정 의 견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토지는 사례의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비교치는 대등함.	**1.000**

1.2.6.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비교 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계
1	1	0.80	0.75	0.90	0.92	1.00	1.00	0.497

기 호	개별요인 비교 내용
1	대상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대상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상업지역중심과의 거리, 주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대상은 사례 대비 환경조건(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에서 열세함.
	대상은 사례 대비 획지조건(경사, 접면도로 상태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결정

산식: 거래사례 토지단가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기 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원/㎡)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602,517	1.000	1.00676	1.000	0.497	301,475	301,000

1.2.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1,200	301,000	361,200,000
합 계	-	-	361,2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3. 토지 시산가액 결정

1.3.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기 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1	358,800,000	361,200,000
합 계	358,800,000	361,200,000

1.3.2. 시산가액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기 호	토지면적(㎡)	토지단가(원/㎡)	감정평가액(원)
1	1,200	299,000	358,800,000
합 계	-	-	358,800,000

2. 건물의 감정평가

2.1. 원가법에 의한 산출내역

2.1.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구조 . 용재 . 시공정도 . 부대설비 . 현상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으며 건물의 특성상 건물만의 거래사례비교법 및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바, 주된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2.1.2. 재조달원가

재조달원가란 현존하는 물건 또는 동일한 효용의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신축·조성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함을 가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원가총액을 말함. 본 감정평가에서는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및 인근 유사물건의 재조달원가를 참고로 하여 결정함.

2.1.3.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감가, 기능적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임.

감가수정 방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대상건물의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수정하였음.

기 호	사용승인일자	기준시점	경과연수	실제 잔존연수 (정액법)	유효 잔존연수 (관찰감가법)	내용연수
2	2006.06.09	2025.05.09	18	17	0	3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1.4.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2.1.4.1. 건물 적용단가

결정단가(원/㎡) = 재조달원가(원/㎡) × 잔존연수 / 내용연수

기 호	층	용 도	재조달원가 (원/㎡)	잔존 연수	내용 연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2	1층	근린생활시설	700,000	17	35	340,000	340,000

2.1.4.2.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층	사정면적(㎡)	단 가(원/㎡)	감정평가액(원)
2	1층	49.1	340,000	16,694,000
소 계		49.1	-	16,69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감정평가액 결정

위에서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다른 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해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토지) 및 원가법(건물)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감정평가액(원)
토지	358,800,000
건물	16,694,000
합계	375,494,00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 공부	면적 (㎡) 사정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비고
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530-9	대	자연녹지지역	1,200	1,200	299,000	358,800,000	
2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70-50	530-9 위 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 기타(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49.1	49.1	340,000	16,694,000	700,000 x 17/35
	합 계							₩375,494,000.-	
				이	하	여	백		

(토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위치 및 부근의 상황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황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거기타(근린생활시설용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 ~ 5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제시목록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임대관계 및 기타	-

(건물) 감 정 평 가 요 항 표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조 기타(샌드위치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마감 등. 내벽 : 샌드위치판넬 마감 등. 바닥 : 장판깔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및 기타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관계	-
공부와의 차이	-
임대관계 및 기타	-

07-2504-2-0025

광 역 위 치 도

N

S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일대

07-2504-2-0025

위 치 도

N

S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530-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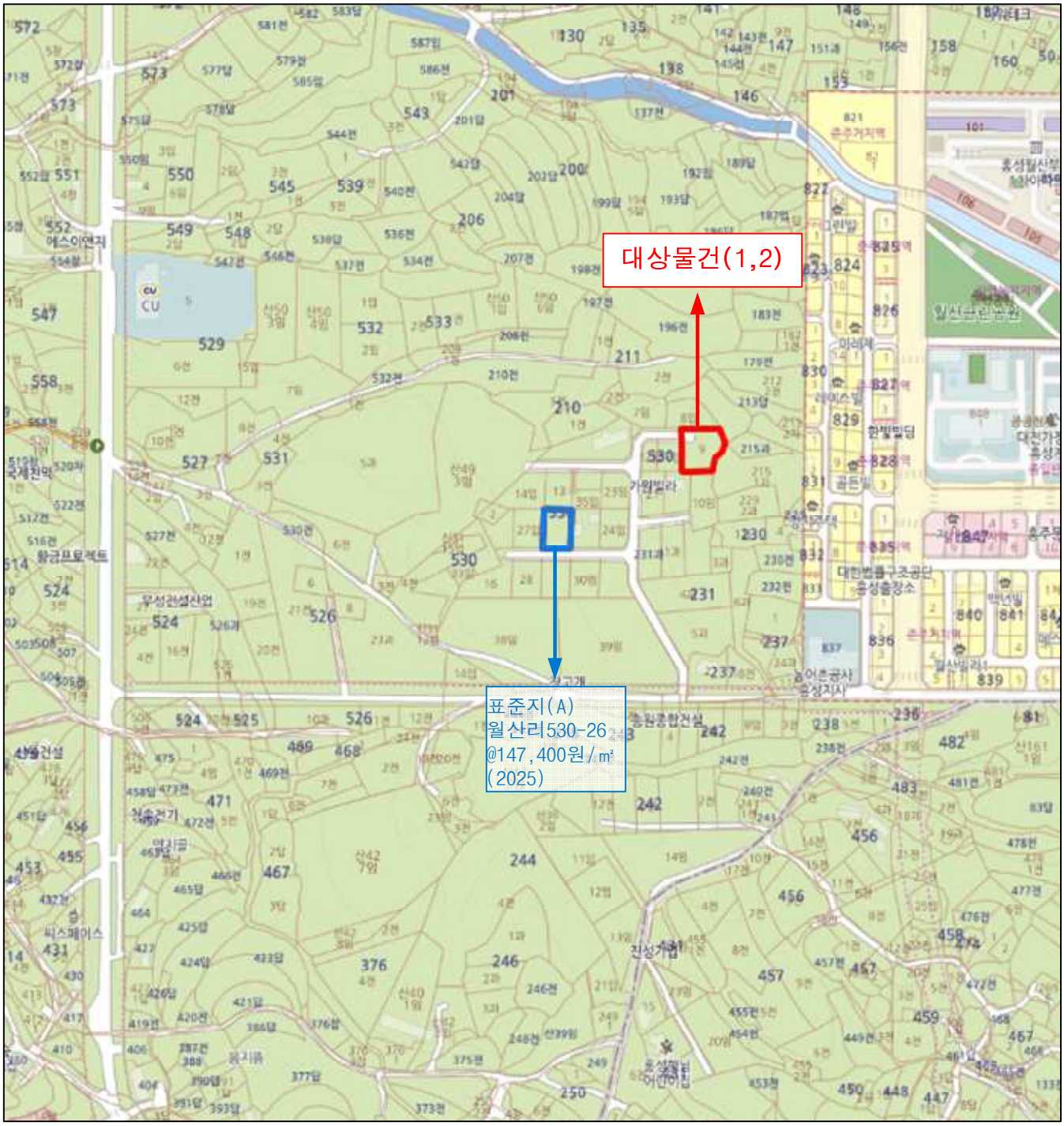

07-2504-2-0025

지적 및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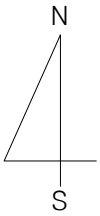

S =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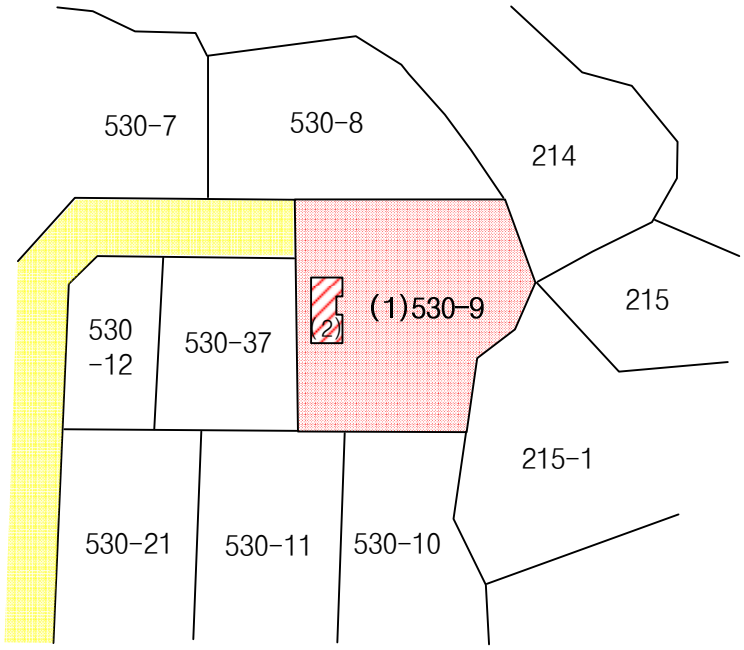

S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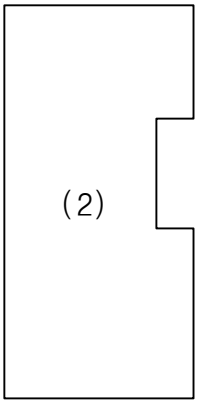

[평가건물]

(2) : [공부면적 49.1㎡]

범 례			
평가 대상 토지 :	평 가 건 물 1층 :	평가제외건물(등 기) :
도 로 선 :	평 가 건 물 2층 :	평가제외건물(미등기) :
도시계획도로선 :	평가건물 3층이상 :	

07-2504-2-0025

현 황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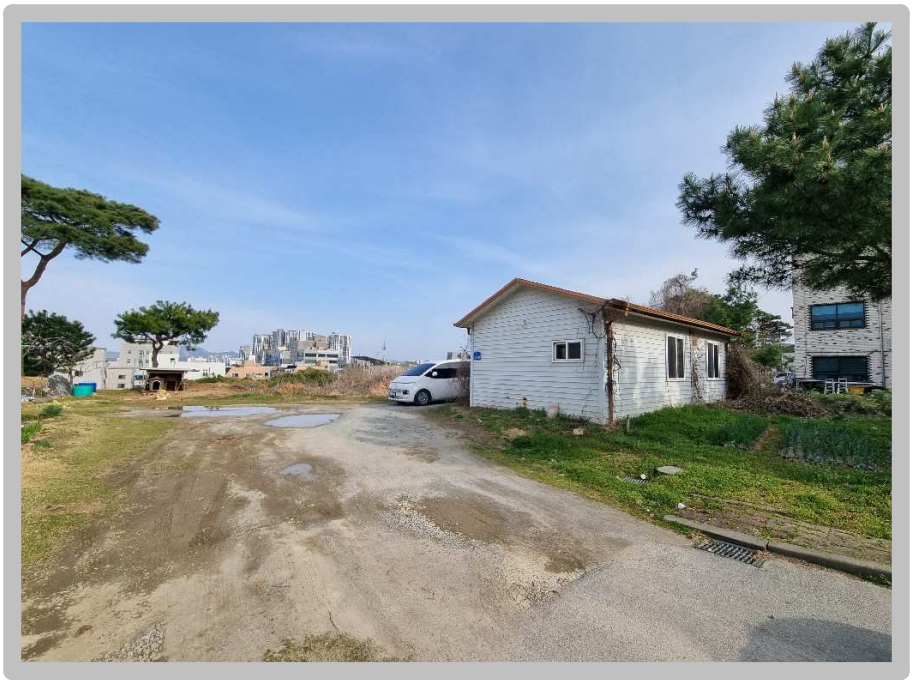

【 기호(1) 전경 】

【 기호(2) 전경 】

현 황 사 진

【 기호(2) 내부 】

【 주위 전경 】